

치과의사 전문의의 다른 전문과목 수련과정 인정기준

제 정 2003. 10. 28. 보건복지부고시 제2003-61호, 시행 2003. 10. 28.
 일부개정 2020. 2. 27.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47호, 시행 2020. 2. 27.
 일괄개정 2020. 7.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40호, 시행 2020. 7. 1.
 일부개정 2024. 7. 19.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142호, 시행 2024. 7. 19.

1. 치과의사 전문의의 다른 전문과목 수련과정 인정기준

과 목 \ 구 분	인 정 과 목	레지던트 수련인정 연한
구강악안면외과	없음	
치과보철과	없음	
치과교정과	없음	
소아치과	없음	
치주과	없음	
치과보존과	없음	
구강내과	없음	
영상치의학과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구강병리과, 예방치과,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자격취득자	1년 인정
구강병리과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영상치의학과, 예방치과,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자격취득자	1년 인정
예방치과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영상치의학과, 구강병리과,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자격취득자	1년 인정
통합치의학과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영상치의학과, 구강병리과, 예방치과 전문의 자격취득자	1년 인정

2. 재검토기한 :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03-61호, 2003. 10. 28.>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47호, 2020. 2. 27.>

제1조 (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영상치의학과, 구강병리과, 통합치의학과와 개정 조항은 2020년 3월 1일 이후 수련을 시작하는 전공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0-140호, 2020. 7. 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142호, 2024. 7. 1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예방치과의 개정 조항은 2025년 3월 1일 이후 수련을 시작하는 전공의부터 적용한다.